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

3450 (32.1)

통610 (369.0P1)

342.911)

전사필



12/21

통일위원회
통일안보
통일안보
통일안보
통일안보

통일원

발간에 즈음하여

자유화·복지화·개방화의 세계사적 흐름과 대내외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통일은 이제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실현해야 할 현실의 명제이자 대비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통일·북한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도록하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원은 범국민적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통일대비교육의 차원에서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관심분야 등을 고려한 통일교육용 자료 8종을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운 소책자로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자료들은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의 효과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료에는 제1편에 공통 교육 내용으로 “통일문제의 이해”를 수록하였고, 제2편에는 “북한의 체제와 이념”(공직자편),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교직자편), “통일과 경제적 과제”(상공인편), “북한경제와 주민생활”(근로자편),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여성편),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대학생편),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

이해”(문화·예술인편),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경찰·공안편) 등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세계 전문가의 글을 분야별로 각각 편집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통일 문제와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며 통일을 준비할 태세를 하나씩 갖추어나가는데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기에 게재된 내용은 통일원의 공식적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첨언합니다.

1995. 4. .

교육홍보국

●●●●●●●●
차 례

제1편 통일문제의 이해..... 9

I. 머리말 / 11

II. 통일논의의 기본전제 / 12

1. 통일의 당위성
2.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III. 우리의 통일노력 / 19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대북정책

IV.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23

제2편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 27

I. 머리말 / 29

II. 북한의 사법제도·사찰기관 / 32

1. 사법기관
2. 검찰기관
3. 변호사 제도

4. 사찰기관

Ⅲ. 북한의 형법과 그 특징 / 40

1. 체계와 특징
2. 기본 입문
3. 주요내용
4. 국가보안법과의 비교

Ⅳ. 북한의 대남 전략과 전술 / 52

1. 통일전선전술
2. 대남한 공산화 기본 전략
3. 김일성 시기의 대남 공작
4. 김정일 시기의 대남 공작 전망

Ⅴ. 통일안보의 문제점과 실태 / 63

1. 운동권의 실상
2. 현 체제 부정의 운동권 실태
3. 사회 내부의 혁명투쟁 세력 침투 실상
4. 북한 및 혁명세력에 대한 경계의식 미흡
5. 독일·에멘 통일의 문제점과 교훈

Ⅵ. 통일 안보를 위한 대비책 / 84

1. 국내 안보 실상의 올바른 이해
2. 북한과 주변국의 올바른 이해
3. 우회 투쟁에 대한 대비책
4. 중·단기 대책의 수립

참고문헌 / 91

제 1 편

통일문제의 이해

박 영 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머리말

동서냉전 체제가 끝나고 인간 생활의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탈냉전의 지역 질서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한 시대의 종언을 맞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와 국제적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 경직성으로 인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체제 유지를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문민정부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감한 개혁정책의 추진과 함께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민족도 새로운 역사의 창출을 위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 이후 그 어느때 보다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민족적 소망인 통일문제를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다듬은 후, 이를 차분하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II. 통일논의의 기본 전제

1. 통일의 당위성

우리에게 통일이란 명제는 더이상 하나의 이상이나 관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그것은 동서독이나 남북에만이 통일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통일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보아야 할 몇가지 이유를 들면¹⁾

첫째, 남한 사회의 발전이다. 남한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남한사회 내의 계급혁명과 공산화를 기도하는 북한의 목표는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며, 우리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은 우려로부터 자신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증거로서 통일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둘째, 국제 환경의 변화이다. 남한의 구소련(러시아) 및 중국과의 수교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추진으로 특징지워지는 동북아 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분단 구조는 과거 어느 때 보다는 남북한이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1) 박영호·김도태, "통일환경의 변화와 「8·15 경축사」의 상황적 배경,"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4~17.

가 되었다.

셋째, 북한 사회의 변화가능성 증대이다. 북한은 동기유발 요인을 갖고 있지 못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고수해 음으로써 경제적 파쇄현상이 나타나고 주민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근래에는 통제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주민의 사회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더이상 남한 공산화 추진 전략에만 매진할 수는 없으며, 북한 내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외 개방과 사회 개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 체제의 개방·개혁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지도자 교체도 통일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민족 분단의 책임을 더이상 당사자에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과거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증오와 대립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협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 관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여 통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두지 않는 통일주

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417~432 및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장은 공허한 담론으로 끝나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³⁾

첫째, 남북한 주민들은 「하나의 민족」이다. 남북한의 7천만 동포는 같은 혈통에 같은 말과 글을 쓰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일구며 같은 역사를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이질화의 심화는 남북한 주민을 마치 다른 민족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민족간의 경쟁을 뛰어 넘어 넘어 남북한 주민이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더불어 살기 위하여 통일은 필요한 것이다.

둘째, 통일은 남북한 민족 성원 모두에게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통일은 바로 남한이나 북한 어느 일방만의 번영과 복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서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삶」을 살 수 없다.

셋째, 통일은 민족의 발전과 도약의 발판이다. 만일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분단이 영구화된다면 민족의 역량은 분산되어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민족의 응비를 기약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들과 접해 있는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 재결합하지 못할

3) 정용진,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33~37.

때 우리 민족의 재도약은커녕 조선말엽처럼 열강들의 각축속에 빠질 수도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한반도는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은 좁게는 동북아에, 그리고 넓게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인 것이다. 통일은 바로 우리 민족이 세계화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첨경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소명이며 실천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우리에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며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부정적 상황의 발생이나 전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2. 통일의 기본 철학과 원칙

(1) 기본 철학

통일은 단순히 분단되었던 국토, 정부 그리고 민족이 재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에 하나의 헌법, 하나의 정부를 가지는 단일 주권국가의 건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민족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됨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며 민족의 번영이 약속되도록 하는 통일이다. 또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시한 제반 정치적 기본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민족공동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통일은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북한의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획일화, 집단화하여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상적 통일을 하고, 하나의 정당으로 일원화된 정치활동을 펴며,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마저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제도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위한 명분 때문이지, 실제로 일반 국민 다수가 역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 인류 역사 발전의 맥락이나 오늘의 세계질서 재편과

정을 볼때 남한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중에서 어떠한 체제와 이념이 보편적인 가치로서 정당화되며 인간의 본성에 가장 알맞는 것인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찾아 낸 가치 있는 삶의 공통 분모인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더이상 이념 경쟁에 매몰되기 보다는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함께 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 통일 원칙

통일원칙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나 통일국가의 수립 절차를 협의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입장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원칙과 통일운동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달성해야 할 통일조국의 미래상 실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1970년대 이후 자주·평화·민주를 3대 통일원칙으로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분단을 막지 못했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쟁이나 어느 일방에 의

한 상대방의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통일에 이르는 길도 분명히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 우선 자주성의 원칙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남북한 스스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주성의 강조가 국제사회와의 고립적인 배타적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적 입장이란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의존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평화의 원칙이다.

통일원칙에서 평화란 바로 한반도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함으로써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무력전쟁이 되풀이되면 우리 민족이 영원히 파멸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무력이나 힘을 사용하여 강제로 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통일 원칙은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이나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평화 추구의 노력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원칙이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번영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하며, 또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또한 민주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통일정부의 형태, 정치와 경제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원칙으로 민주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며, 통일은 계급이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원칙을 통해서 만이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의 대단결을 달성할 수 있다.

Ⅲ. 우리의 통일 노력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0년대 이후 우리정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선

연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과 탈냉전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통일노력이 요구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이후 여러 계기를 통해 밝힌 통일정책에 대한 구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광복 49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토적·제도적·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자세로부터 적대감과 대립이 장기화됨으로써 훼손된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의 바탕 위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접근의 방식으로 그 주안점을 변화시켜 왔다. 즉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가 그것이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는 남과 북이 냉전시대의 산물(産物)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서로를 파괴·전복하거나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약속을 지켜가면서 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이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신뢰를 토대로 통합과정을 관리하는 단계로서, 남북간에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의 동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남과 북은 이 단계에서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또 남북연합에 공동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들 공동기구에서 국가 통합 즉, 정치와 제도의 통합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남북정상회의나 각료회의를 열어 동질화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거나, 남북의 의회대표들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셋째,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합의·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국가 수립이 곧 통일의 완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분단시대의 잔재로 인해 여러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정부 수립 후에도 온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명실상부한 민족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대북 정책

국민적 지지에 기초한 문민정부의 이점을 살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구사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타격을 받게 되었으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로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의 틀이 마련됨으로써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노력은 일단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북한의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남북대화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상회담 개최합의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북한도 이제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냉전의 껍질을 깨고 본격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자유·복지·개방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었으므로, 남북한이 협력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함께 대북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인식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전문)이며,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제1조)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도 이제 이념 대결의 틀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촉구하였다.

IV.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남북간 분단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결과가 한반도 분단의 영구 고착화 가능성의 증대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북한 경제의 부진과 북한 주민의 빈곤현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통일의 과제는 남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변국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 국제문제로 비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현 시점은 우리 민족에게 혼치 않은 민

족발전의 기회와 함께 우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가지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탈이념적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 관계가 이념대립을 지속함으로써 더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과 공영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유일한 선택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문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두 개로 나누어진 민족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빈칸으로 남았던 민족발전사의 공백 기간을 매우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주된 임무는 북한 주민보다는 남한 국민의 손안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 과정이 피와 땀을 수반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말해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통일에 따르는 부담이나 고통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통일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민족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간 통일은 정치·군사적 대결에 따른 어느 일방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세계사를 주도하는 일원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열강이 각축했던 구한말의 역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점이 중요한 통일과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대세 앞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통일역량」을 더욱 기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적인 「통일환경」을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제 2 편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

오 문 균 (경찰대 연구관)

I. 머리말

베를린 장벽과 브란덴부르크의 문이 분단 독일의 상징이었다면, 우리의 경우는 155마일 휴전선의 철조망과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이다. 전자의 경우는 예상과는 달리 일찍이 장벽이 제거되고 문이 열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최근들어 열렸던 문마저 닫혀지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통일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비례해서 실질적인 통일에의 준비보다는 구호성 통일만이 난비하고 있다. 비례하여 모든 학자들의 세미나장, 정치인이나 노동자들의 집회 그리고 농민들과 학생들의 개방 반대 집회까지도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해야 구색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다.

한편 50여년에 이르는 분단의 역사가 쉽게 해소될 수 없으며,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혹은 1990년 브란덴부르크 문의 개방으로 흔히 얘기되는 독일의 통일은 지극히 조용히 이루어낸 것이므로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면, 당사자는 어느 사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 반동의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당하기 일쑤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외형상은 열렬한 통일 지상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민중(proletariate)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는 통일만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며, 다른 여타

의 통일론은 지배 집단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 반동적 작태이지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의 통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남한에서 미군을 먼저 추방하고 난 뒤에 공산주의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연방제 통일이란 것을 올바른 남북통일への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남북한을 빠른 시일내에 통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집단은 반통일 세력이라고 체제부정의 차원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1994년에 들어서서는 "현재의 정권은 반민족적이며, 사대매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⁴⁾면서, 최고 통치자의 통치행위와 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통치자의 통치행위 및 통일론에 대한 부정은 1993년의 신장권 출범 1년 동안은 자제되었으나, 1994년 들어서 급속히 증폭되어 운동권의 세계파로 확산되고 있다.

실상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과의 통일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에 앞서 남한내의 통일론을 통일하는 것이 절실하게 시급해졌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론이 남북통일의 주요 당사자인 남한내에서 극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1994년 8월 15일의 경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시사하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통일에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4) 경성대 학생회, "에국경성 총노선" (1994), p. 22.

남북통일을 빙자한 계급투쟁(階級鬭爭)에 의한 식민지 해방론자, 노동자·농민을 축으로 한 계급투쟁 집단들의 통일을 빌미로 무한정한 불법적 행동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다.

이 시점에서 치안 실무자들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통일과 관련한 혼란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남북한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을 위하여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을 대비하여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지금까지 대다수 국민들의 경우는 통일은 남북한 간의 몇몇 당사자가 만나서 합의하면 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 또한 치안 실무자들의 경우도 단순히 보안과 경비를 책임맡은 것으로 생각하고, 실질적 통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일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이 1994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전문가와 분야별 담당자의 차원에서 조용히 실질적으로 준비할 때라 할 수 있다.

Ⅱ. 북한의 사법제도·사찰기관

1. 사법기관

(1) 사법기관의 본질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민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고, 사법권을 독립된 법원에 귀속시켜 재판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권력체제는 처음부터 국가를 유지하는 3권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당을 핵심으로 한 유일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이 국가와 정부의 원동력이고 모든 정치적·경제적·사상적 활동의 중추이기 때문에 당이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임무를 조정하고 지도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권력통합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헌법 제5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서 조직되며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는 ‘민주집중제’라고 부른다.

한편 북한 헌법 제159조에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북한 재판소의 경우

인사나 업무상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다.

(2) 사법기관의 임무

북한 헌법 제155조는 “재판소는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처음부터 사법기관의 존립목적은 사회주의체제의 수호와 그것의 유지발전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재판소는 당, 국가주석,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 등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공산당의 노선을 실천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도구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절대적인 통치자였던 김일성은 “여러분이 법을 해석 적용할 때 우리 당이 요구하는 계급적 관점 다시말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관점에 의해서 정확히 해석하라는 말이다. 우리의 법 자체가 우리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한 법을 정확히 집행한다는 것은 곧 당의 정책을 확실히 집행한다는 것으로서 당의 지도에 복종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⁵⁾ 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조선로동당 당역사연구소,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 선집」, 제5권(1968), pp. 451-452.

국민들의 자유와 권익의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여 만들어진 우리의 사법 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2. 검찰기관

(1) 검찰소의 조직

북한의 검찰 조직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검찰소,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사회주의 헌법 제162조), 재판소의 판사나 인민참심원(人民參審員)이 최고인민회의나 지방 주권기관에서 선거되는 것과는 달리, 검사는 임명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검찰소의 경우에는 중앙검찰소만이 최고주권기관 앞에 책임지고, 도검찰소나 시·군 검찰소는 그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할 뿐 지방주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북한의 검찰조직은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수직적인 상명하복의 구조를 이루어 전국에 걸쳐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유일성을 확립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당시 사법 정책과 법령 해석의 유일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당 독재체제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검찰소의 임무

사회주의 헌법 제145조는 검찰소의 임무에 관하여 첫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을 감시하고, 둘째, 국가기관의 결정이나 지시가 헌법이나 최고인민회의 법령 또는 공화국 주석의 명령 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감시하며, 셋째,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검찰 임무중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를 검찰의 감시 기능이라고 하며,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 검찰의 임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즉 북한의 검찰기관 역시 앞서 언급한 재판기관과 동일하게 당의 사법정책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감시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감시기능에 대해 북한은 “공화국의 법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법률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국민의 행동규칙이 규범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기관에서 국가기관·국민등이 법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당의 정책을 전국적 범위로 일률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보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실제로 감시기능을 행사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준법성의 유일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설명과는 다르며, 지방 주권기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수직·복종의 검찰조직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완성을 위한 당

의 전위대로서 인민의 활동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검찰기관이 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위대 역할을 담당함에도, 형법상의 「반혁명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소 예심원이나 검사가 아닌 정치보위기관 심사원이 예심을 하도록 하여 반혁명범죄에 대해서 만은 별도의 특별취급을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86조).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심사를 여타 범죄와 동일하게 검찰에서 검사가 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반혁명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권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검찰기관은 북한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당의 전위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로서의 역할은 거의 수행치 못하고 있다.

3. 변호사 제도

북한에도 변호사 제도는 명목상 존재한다. 사회주의헌법 제157조는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1948년 11월 1일 내각 결정 제 56조로 「변호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성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북한의 변호사 제도 역시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와는 조직과

활동 등이 현저하게 다르다. 북한에서는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맡아서 독자적으로 변호사의 소신에 따라 사건을 처리(변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도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변호사회를 주체로 하여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

북한에서는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개별행동을 일절 불허하며, 당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과 통제하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변호사 제도의 원래 목적인, 순수한 의미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변호사 제도로서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북한에서의 변호사 제도란 다른 사법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정책을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나 국가의 부당한 정책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과는 먼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사찰기관

(1) 사회안전부

사회안전부는 북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더불어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1945년부터 당시 내무성 산하의 1개국 형태로 존재했다. 그후

1972년 12월 헌법의 채택과 더불어 사회안전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사회안전부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비밀경찰조직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이동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는 처음에는 사회안전부 내의 정치보위국 형태로 존속하다가 1973년 5월에 국가정치보위부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1982년 4월에 국가보위부로 개칭한 후 최근들이 다시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사법재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최고의 정치 사찰전담기구로서 정치적 범죄자에 대한 감시 구금 체포 처형을 책임지고 있다. 즉 국가안전보위부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반당 반체제 음모자, 간첩 등의 용의자를 구속하고 처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최고지도자의 직속 최고 정보수사기관으로서 중앙으로부터 각 도·시·군의 행정단위와 최말단 행정조직인 리단위까지 요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군대내에도 중대 단위까지 지도원을 파견하여 군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관장한다.

또 국가안전보위부는 과거 김일성의 호위행위, 정치사상 범의 수사, 각급 행정기관의 직원 수사, 사회단체 공장의 감시, 북송교포의 감시, 유무선통신의 도청 및 적발, 국내외 간첩의 색출과 검거, 북한내의 반공주의자 색출을 담당한다. 그리고 간첩을 색출하는 공작원을 양성하는 일과 김일성 부자세습 체계의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문제를 척결하는 역할도 수행했었다.

(3)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1977년 12월15일 최고인민회의의 6기 1차회의에서 신설되었다. 김정일은 1982년 12월15일 발표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라고 교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는 해당 관할지역 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농민들의 법무생활을 조직 지도하는 집체적 지도기관으로 승격 강화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해당 지역에서 법무생활을 감독 통제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관의 대표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기능은 “매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따라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감독 통제기관들에 과업을 주고 그 집행 정형을 보고받으며 제기된

문제를 옳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⁶⁾

그러나 실제의 내용은 김일성의 교시 내지는 유일체계의 지도지침이 북한사회의 발단까지 신속하게 과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검열위원회와 검찰소를 비롯한 북한사회의 감독통제 기관들이 감독통제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사찰기관을 사찰하는 이중적 감시통제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사회의 독재적 폐쇄성을 그대로 엿보이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Ⅲ. 북한의 형법과 그 특징

1. 체계와 특징

북한의 경우도 북한 주민들의 죄를 다스림에 있어 형사실체법인 형법과 형사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일단 형사법 체계는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형사법 체계는 우리의 형사관계법과 크게 다르다.

6)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94), p. 235.

형사관계법과 관련하여 볼 때 우리는 기본법인 형법 이외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과 행정법규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경제구조의 국제화와 사회생활의 고도화에 따른 대처 및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형법을 제외한 형사관계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8·15 해방직후부터 1950년 3월 3일의 구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농산물 매상 불응 등 처벌에 관한 건」, 「결정 지령 명령 등 위반에 관한 건」 등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거의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북한이 형사관계법을 구체화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유추되나 가장 신빙성 있는 견해는, 북한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공산당의 통치 논리에 의한 소급효와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결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 유형만으로도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주석이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⁷⁾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말뿐이며 북한의 모든 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특별히 선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⁸⁾ 북한에서는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7) 북한 헌법 제107조.

8) 법제처 편저, 「북한 법제개요」(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1992), p.161.

헌법」을 채택함에 따라 1974년 12월 19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1976년 1월 10일 재판소 구성법도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신헌법 (사회주의 헌법이라 부르며,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개정) 외에 알려진 것이 없다. 현재까지 입수되어 북한의 법제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1992년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조문과 북한형사법 해설서 정도이다.⁹⁾

현재의 북한형법은 5편 17장 2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구형법이 2편 23장 301개 조문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할 때 형벌의 수와 조항 수가 대폭 줄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형법의 42개장 372개조 부칙 11개조의 숫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이는 북한의 경우 죄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며, 형벌을 유추해석하고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죄를 세분화하여 피의자의 법익(法益)을 가능한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신형법의 경우는 각칙으로 일반 범죄와 반혁명 범죄를 구분하여 현재 북한이 파행적으로 유지하는 북한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조항을 두고 있다. 특이한 것은 반혁명 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 (제65조~제66조)까지를 두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부정 비판하는 모

9) 쉬상현, 「조선형법해설」(평양: 국립출판사, 1957)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든 행위를 형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남한의 정부가 간첩이나 혁명투쟁 지향의 공산주의자를 규제하는 근거의 국가보안법보다 몇배 강하게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2. 기본 입부

북한 형법의 기본입부는 크게 계급투쟁론의 고취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혁명전통의 계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형법이란 일반적으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 규범의 총체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형법을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공산주의 제도와 혁명위업의 실현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자들을 제압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한 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반 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형법에서는 범죄의 개념과 형벌의 목적 등을 공산주의 혁명완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형법이 이념적 측면에서 계급투쟁적 본질로 무장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¹⁰⁾

한편 김일성은 항일 혁명투쟁의 시기에 일본의 파쇼악법을 청산하고 조선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법을 제

10) 법제처 편저, 앞의 책, pp.176-177.

정 실시하는데 관한 사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경험과 업적을 쌓아 공화국 형법의 혁명전통을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북한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정책의 요구, 형법상의 원칙과 제도는 혁명전통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혁명 투쟁을 비롯한 모든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모든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보장하는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공산정권은 북한의 형법을 빨치산의 항일 투쟁정신을 이어받은 독창적인 형법의 체계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은 1926년에 제정된 소련의 형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구소련 형법의 경우는 제9조에서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28조에서는 형벌의 종류에서 사형, 징역, 교화노동 외에도 권리박탈과 재산몰수 그리고 원격지 추방 등을 규정하고 있다.¹¹⁾

북한의 형법은 1926년의 소련 형법을 대부분 모방한 것이다. 그후 소련은 1960년 형법의 개정에서 인권을 현저히 규제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 그러나 북한은 1974년 12월19일 형법 개정시 소련의 인권규제 조항을 그대로 둔채 오히려 김일성 유일체계의 강화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11) 법무부, 「북한법연구Ⅶ」(1990), pp.13-14.

3. 주요 내용

1974년 12월 19일 개정된 것으로 알려진 신형법을 중심으로 하여 알아본다.

첫째, 반혁명범죄와 일반범죄는 발생근원을 달리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규제 및 진압대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에서는 반혁명범죄의 발생을 계급적 근원에서 찾고 있으며, 계급적 근원이란 몰락한 착취계급의 잔여세력을 비롯한 인민정권의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북한 형법에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다.

둘째, 공산주의 사회에서 반혁명과의 투쟁을 성공리에 진행시키려면 반혁명분자의 계급적 근원인 착취계급을 대상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화하고, 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¹²⁾

셋째, 반혁명분자의 근원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착취계급적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을 철저히 단속하고, 반혁명분자의 배후에 잠복하여 반혁명범죄를 조직하고 지휘하는 원흉을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반혁명분자에 대해서는 대중 앞에서 공개처형하여 반혁명분자의 함정에 빠지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비록 경미한 사항이거나 범죄의 준비단계 또는 미수에 그친 단계라 할 지라도 단호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는 남한의

12) 김규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형사법제」(일본: 사회평론사, 1988), pp. 11-141.

제반 국외 공산계열과 연계하여 남한의 공산화를 추진하고자 혁명투쟁을 전개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보다 몇십배 강력하다 할 수 있다.

다섯째, 신형법은 반혁명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형 및 재산몰수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추(刑事訴追) 시효제도와 집행유예 제도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

이러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과격한 규제는 신형법 제162조를 통하여 유추해석할 수 있는 바,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방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정당방위를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혁명분자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의 개념 자체를 인정치 않고 있다.¹⁴⁾

여섯째, 신형법 제63조에서는 북한이 스스로를 자주적이라고 칭하면서 민족반역죄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제63조에서는 민족반역죄를 규정하여 일제시대의 친일분자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은 민족의 자주성 신장보다는,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하거나 그들의 정권 및 당을 반대하는 제반행위, 김일성 개인을 반대하는 제반행위까지도 반혁명 범죄로 규정하여 극형에 처함으로써, 북한공산정권의 호전성, 비민주성, 반통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3) 김근식, 「형법학 I」(병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p. 15.

14) 김규승, 앞의 책, p. 190.

4. 국가보안법과의 비교

(1) 국가보안법의 본질

현재 남한에 존재하는 폭력적 공산주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은 1994년 1월 4일 여야합의에 의해 개정되었고,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제1조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이 법의 적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혁명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유추해석과 그에 따른 법의 소급과는 성격상 판이하게 다르다.

제2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에 명시된 반공산주의 그리고 반 김일성 부자에 대한 범죄의 처벌법과는 판이하게, 법의 적용이 극도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형법중 반혁명범죄를 규정한 제162조는 반혁명범죄자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다. 즉 반혁명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 어떤 형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가

해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가혹했다.

한편 남한 국가보안법의 범죄자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에 대한 해태(懈怠)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10조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관련조항이 개정된 1991년 5월 31일 이후,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관련조항 해당자에 대하여 친족이 불고지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그러나 유사한 북한의 형법 제138조는 일반 범죄자를 숨겨준 경우에까지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교화노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65조의 반혁명범죄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규정하여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친 인척에 대한 처벌의 구별이 전혀 없다.

이외 여타의 남한 국가보안법의 죄와 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비교할 수 있는 북한의 반혁명범죄와는 경중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1994년 9월 14일 우리나라의 대법원 형사 3부는 “용공이적 위반죄(이적표현물 소지 등)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갖고 있는 책 노트 등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점은 인정되지만 빈부의 차와 분배의 공정성 현실모순 등에 대한 비판과 학문적 관심에서

이를 읽거나 소지 또는 토론한 사실만으로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¹⁵⁾고 밝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조직이나 인물로 제한하고 있다.

(2)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실상

그렇다면 북한과 남한의 일부 이념투쟁 집단이 유사한 맥락에서 전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주장의 실상은 무엇인가.

첫째, 폐지 주장론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남한정부의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일제하의 독립운동가까지를 규제했던 사상범의 통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제하의 사상범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씌운 굴레였는데, 현재 국보법이 그런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남한의 현재제를 부정하는 관점이다. 즉 현재의 남한은 과거 일제의 식민지에서 오늘날에는 미제의 식민지로 지배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식민지 정권의 대리 관리자라는 입장이다. 이런 민족해방투쟁의 노선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주로 NL주사파 계열의 운동권이다.

15) 동아일보, 94. 9. 14.

“식민지 한국사회는 학우 자신 스스로의 자주성이 옹호 발양되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주체적 교육도 받을 권리가 박탈당한 조건은 민족해방(억압적 착취구조의 탈피)의 완수라는 과거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결국은 학우 대중 스스로의 지향과 요구가 민족해방운동의 과제를 완수해 가는 정도에 따라 실현의 정도가 가늠되기 때문이다”¹⁶⁾면서, 현정권을 계급투쟁으로 타도해야하는 혁명투쟁의 대상임을 제시하며, NL주사파 관점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전술까지를 제시하고 있다.¹⁷⁾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또다른 중요한 주장의 하나는 인권의 신장과 노동자·농민의 해방이다. 이 주장은 NL주사파에서도 주장하나, 계파별로 엄밀히 구분할 때 PDR파와 NDR파의 계급투쟁 집단들이 좀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남한에서 국가보안법만을 폐기하고 나면 노동자들과 농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투쟁은 좀더 활성화 될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농민과 노동자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핵심은 남한내 공산주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나면, 노동자 농민을 주력군으로 계급투쟁을 자유스럽게 전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공산혁명의 승리로 인한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

16) 제2기 한총련, 「94대의원대회」, 갑오농민전쟁 100년 4월, p.4.

17) 위 유인물, pp.6-11.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장의 본질은 남한사회에서 노동자 농민을 주력군으로 한 공산혁명을 이루어 내자는 것이다. 관련된 내용을 직접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파쇼와 자본가들의 엄청난 물리력 앞에 노동해방의 깃발 움켜쥐고 ‘동지애’ 하나로 지켜온 빼앗길 수 없는 우리들의 혁명적 순결 혼!

짓밟힌 세월속에 살아 있는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이제 역사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남한 사회주의 변혁운동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고 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근본적 목표와 현실의 과제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단결의 결정체인 사회주의 노동자 대중정당 건설의 깃발을 휘날리는 벅찬 감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¹⁸⁾

셋째, 폐지주장의 핵심 중의 또 하나는 자유민주국가인 남한에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 주장을 보면, “요즈음 국가보안법에 의해 단죄되고 있는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만일 누군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변혁의 길로 이끌기 위한 사회과학적 인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표현하려 하면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된다.”¹⁹⁾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과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과학적 인식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18) 사노맹, 「힉차 노동법 개정 투쟁으로 반 김영삼 정권의 선을 굳게 세우자」(1993. 9. 8), p. 4.

19) 한기해, 「국가보안법」(도서출판 공동체, 1989). p. 44.

혁명사상의 다른 표현이며, 그것을 통하여 남한사회를 공산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진정한 사상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남한을 공산사회로 만들자는 본심을 교묘하게 변형하여 국민들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IV. 북한의 대남 전략과 전술

1. 통일전선전술

공산주의 기본이론이나 정치학의 관련 분야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통일전선전술」하면, 우리의 소원인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직전술이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은 생전에 통일전선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술차원의 통일전술을 전략차원 측면에서 전개하도록 교시까지 했다.

통일전선의 최초 연원은 레닌의 저서 「공산주의 좌익소아병」(1920)이며, 여기서 “정면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는 정세 하에서는 상대편의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이용하고 동맹가능한 부동층과도 타협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비록 불확실하고 조건적 세력일지라도 타협하거나 협조하라”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제3차 코민테른대회(1921)에서 '통일전선에 관한 테제'가 채택된 이래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주적을 포위, 고립화시키는 동맹수법으로 통일전선 운동을 중시하게 되었고, 제7차 코민테른대회(1935)에서 소위 「다미톨로프테제」라 불리는 히틀러의 나찌즘, 뭇솔리니의 파시즘 및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항한 '반파쇼인민전선' 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오늘날의 통일전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통일전선의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조명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어느 때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 세력의 현존역량만 가지고도 주적을 충분히 타도할 수 있을 때는 자신들의 역량만 갖고 주적을 타도한다. 통일전선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공산당 세력만으로는 혁명투쟁이 어려울 때, 비록 비공산당 세력일지라 하더라도 주적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동맹하여 그들의 힘을 활용하여 적을 타도하고 그후 공산세력을 지지하는 세력 이외에는 모두 제거하는 전술인 것이다.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전선 형성원칙은 먼저 조직상 원칙으로,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군중노선을 결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전위당 영도하에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학생 및 진보적 지식인 동맹을 핵심으로 삼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면서 소생산자, 하층군인, 소 자본가 및 각종 민중과 연합하는 군중노선을 결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1994년 북한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총람'에 의하

면 북한은 남한혁명을 위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1949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한 바 있고, 이후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 등 구축을 외치며 1980년대 통일혁명당의 후신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위장 출범시킨 바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범민족대회를 개최했다. 그후 범민족대회를 발판으로 남북한과 해외 동포를 연합한 친북 반한 통일전선체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등을 결성했으며,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 대남한 공산화 기본전략

1964년 2월 27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4차 중앙위원회는 “조국통일의 대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혁명력을 증원하자”라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남전략의 기본기조로서 3차원의 혁명전략을 수립했다.²⁰⁾

북한이 말하는 3차원의 대남혁명 전략이란 첫째, 남한의 혁명기지로서 북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남한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전쟁준비를 완료시켜 북한의 전지역을 공산혁명 기지화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4대군사노선의 완료이다.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20) 유서립, 『남북한통일론』(법문사, 1994), p. 214.

우상화 체제의 완성이었으며, 권력세습의 완성이다.

둘째, 「남조선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남조선혁명역량의 강화는 남한의 현존 정부를 약화 내지 무력화시키고 남한내의 용공세력을 확대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남한조선노동당」과 같은 지하당 조직, 북한동조세력 확보, 민·관·군간의 이간 책동, 남한정권 전복음모 등으로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²¹⁾

셋째, 북한의 또다른 투쟁전략은 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핵심은 국제공산주의 세력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제3세계에 속하는 비동맹제국과의 유대를 증진함으로써 이들로 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즉 국제 사회에서 반한, 반미 투쟁을 강화시키고 더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 시킴과 동시에 미·일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이간 시켜, 한국의 국제적 고립화를 기도하는 정책이다.

북한의 남한 공산화전략은 다시 평화적·비평화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평화적 방도

북한이 취하고 있는 '평화적 방도'란, 북한의 혁명역량과 남조선 혁명역량이 단결하거나 합작하는 방법으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현 정권이 제3의 요인에 의하여 용공내지

21) 앞의 책, p.214.

는 연공정권으로 교체된 후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협상을 통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용어만 평화적 방도이지 남한을 공산화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남한 내의 재반공산세력들의 혁명적 연대를, 통일전선전술이라 부른다.

그러나 평화적 방도의 통일도 북한의 폭력적 지원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김일성은 1968년 2월 “무장들이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모든 투쟁 형태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며, 결정적인 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투쟁, 무장투쟁, 민족해방투쟁이다.”²²⁾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방침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평화적 방도란 한낱 그들의 위장평화 구호에 지나지 않고 결국 혁명의 수행을 위하여는 오직 비평화적 폭력적 방도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음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그들이 평화적 방도로 대화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공산화 통일을 위해서 비평화적 방도를 사용할 수 없는 전략적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러한 방도를 사용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전략적 상황과 능력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현재 북한의 평화적 방도라는 것은 범민련과 범청학련 그리고 한총련등을 앞세운 남북한 연방제 통일의 선전과 고취,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통일전선전술의 일부이다.

22) 내외통신, 제354호(1983. 10. 21).

23) 유석달, 앞의 책, p.217.

(2) 비평화적 방도

비평화적 방도란 무력을 동원한 전쟁의 방법으로 남한을 공산화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한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비평화적 방도에 관하여 북한은 “우리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공산주의자로서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어느 때든지 한번은 그놈들과 해방전쟁을 하여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로 김일성의 주장을 빌어 표현하고 있다.²⁴⁾

이러한 비평화적 방도에 따라 북한은 정규군에 의한 전면전의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이를 위한 준비로서 정규군은 물론 게릴라 및 테러전을 비롯한 각종 비정규군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전의 구체적인 사례는 근자의 「남조선노동당 사건」의 경우로, 북한이 1995년 공산주의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남한내 대남 공작기구를 총망라하여 구축한 조직이다. 또 그들은 「민중당」이라는 정당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1992년의 대선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남한 공산화 공작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²⁵⁾

3. 김일성 시기의 대남공작

북한의 남한공산화를 위한 기본방침은 조선로동당 규약전

24) 허종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사회과학출판사, 1975), p.270.

25) 유석렬, 앞의 책, p.220.

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1945년 9월 19일 ‘부가초프’라는 이름의 여선을 개조한 소련군함을 타고 소련군 대위의 견장을 달고 원산에 들어온 이래²⁶⁾ 지난 1994년 7월 사망시 까지 결코 남한의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책은 죽어서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선지 50여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41년동안 진행된 북한의 남한 공산화 공작은 앞서 일부 언급한 것처럼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정한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으며 ① 북한사회주의 혁명역량의 강화, ② 남한사회주의 혁명역량강화, ③ 국제사회주의 혁명역량의 강화이다. 물론 이러한 남한의 공산화 공작계획의 수립은 김일성의 지시에 근거한다.²⁷⁾

김일성의 남한 공산화 공작은 크게는 통일전선전술에 속하나 ① 지하당 건설 전술, ② 통일전선전술, ③ 대중투쟁전술로 세분할 수 있다.

지하당건설 전술의 경우 김일성의 관점에서 보면, 1950년의 6·25남침, 그리고 1960년의 4·19에 따른 남한사회의 혼

26) 허동찬, 「김일성 항일투쟁 공방」(도서출판 원인정보, 1989), p. 72.

27) 「김일성저작선집」, 4권, p. 239.

란이 남한을 공산사회로 이끌 결정적 시기였으나 남한내 혁명적 당인 지하당이 부재하여 공산혁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서 구체화되었다. 김일성은 관련된 방침을 1961년 9월의 제4차 당대회에서 언급했다.²⁸⁾

북한은 그동안 계속해서 남한내 지하당 건설을 시도했으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60년대 통혁당사건과 인혁당사건, 1970년대의 남민전사건, 1980년대 한민전 사건, 1990년대의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사건을 들 수 있다.²⁹⁾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0~40년대 중국에서 있었던 국공합작, 1930년대 좌 우 합작에 의한 순수한 독립운동 단체로만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신간회」의 태동을 들 수 있다.³⁰⁾

전자는 중국 공산화의 교두보가 되었고, 후자는 결국 좌익과 일제의 농간에 의해 해산 되었다.

현재 남한내에 존재하는 NL주사파 대학생들 중심 학생회연합의 「한총련」, 통일을 위한 투쟁단체로 선전된 「전국연합」과 「범민련」 그리고 「범청학련」 등도 크게는 김일성시기의 대남 공산화 전략과 연계된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통일전선전술은 농민단체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면상은 남북한의 통일, 그리고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어 북한과 직접 연계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러한 단체나 활동

28) 위책, p. 393.

29) 오문균, "간첩단사건 계기로 본 북한 대남공작의 실체"(월간동화, 1992. 11), pp. 162-171.

30) 오문균, 「한국의 초기공산주의 활동에 관한 연구」(1985), pp. 85-90.

의 일부가 연계되었지, 전체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점이 치안상의 어려운 점이다.

끝으로 대중투쟁 전술이다. 합법과 비합법, 반합법의 제반투쟁,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배합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투쟁의 전술에는 혁명진영의 세력과의 투쟁력 강화 그리고 사회혼란 조장등의 방법이 있다.

4. 김정일 시기의 대남 공작 전망

김일성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구도는, 지난 20년간 김일성의 지원하에 권력세습의 기반을 닦아온 김정일이 새로운 통치자가 된다는데 국내외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정일은 김일성사망 직전까지 당부문에서 중앙위 상무위원,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직을 맡았었고, 군사부문에서는 국방위원장이었으며, 원수로서 최고사령관직을 맡는등 실질적인 권력서열 2인자였다. 따라서 김정일 집권(정확히 김일성 사망이후) 이후의 대남정책은 아래와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김일성 사후의 북한체제는 남한의 공산화를 포기했다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남한정권은 “몇푼의 돈을 위해 몸을 팔며 수모와 멸시를 받다가 종당에는 버림을 받는 것과 같은 창녀의 운명”³¹⁾이라고 극단적인 비난을 하면

31) 로동신문, 1994. 9. 30. p.5.

서, 김영삼정권 역시 역대 남한정권들처럼 공산혁명에 의한 타도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³²⁾

먼저 예상되는 김정일 체제의 당내 특성은 첫째, 김일성과 다른 위상으로 인하여 김정일이 북한 권력구조의 핵심에 해당하는 당을 빠른시일내에 장악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군부 핵심세력들에 의한 도전적 반발이 김정일이 후계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로 등장하고, 김정일체제 붕괴의 돌발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이는 남한의 정치 군사적 불안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³³⁾

이러한 북한의 예측되는 체제불안에 대해 대처해야 할 제 1차적인 책임은 남한내의 치안실무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불안속에서 앞으로 남한의 위정자와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부분은 김정일 체제하에서 예상되는 대남공작이다.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단기적 대남공작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체제의 대남 공작정책은 유화와 강경정책을 적절히 구사하는 양상을 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즉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화국면의 기초위에 평화 공세를 펼칠 것이 예상된다. 즉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 구사했던 대남 공산화 전략의 기본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남한을 아직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32) 로동신문, 1994. 9. 25 p.5.

33) 장청수, "한반도 통일환경의 명암" (자유공론, 1994, 8), p.63.

상태속에서 체결된 북·미협상 타결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한의 체제를 부정할 것이다.³⁴⁾

결국 남한을 타도대상으로 전제한 상태하에서 고립화 전략을 펴할 것이다.

둘째, 당분간은 직접적인 대남 도발보다는 북한체제 내부의 조직강화에 주력하며 예상되는 북한 내부의 권력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것이 예측된다. 단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내 북한동조 세력의 힘을 빌어 남한사회를 혼란시키는 채동을 구사할 것이다.

위의 전망이 김정일 체제에 의한 대남 전략의 단기적 전망이라면, 장기적 전망은 좀더 비관적이다. 미국과 북한이 일단 협상을 타결지었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들과 일·러와 같은 관련국 관계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³⁵⁾ 즉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남북한간의 대화는 시기상조라고 예상되고 있다.

북한 공산정권 등장의 후견인이었고 최근까지도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러시아의 이즈베스차지 편집국장 레오니드 물리친은 김일성 사후 등장할 “김정일 체제는 억제된 주민들의 증오가 폭발할 것이고, 따라서 김정일 체제는

34) 조선일보, 1994. 7. 15. p.6.

35) 조선일보, 1994. 8. 18. p.5.

한시적이며 곧 붕괴될 것”³⁶⁾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전망과 관련하여 북의 김정일과 김정은 추종세력들은 그들의 통치력이 한계에 다다를 때, 대 남한 공산화 공작을 오히려 강력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정일은 1973년 당조직 비서가 된 후 대 남한 테러전에 깊숙히 간여했다. 그는 1976년의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을 직접 주관했으며, 이밖에 버마의 아웅산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NPT 탈퇴 사건등을 주관하여 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김정일의 경우는 남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강경한 기조 하에서 각종 대남 와해공작을 시도해야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귀순자와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김정일의 대남정책은 장기적인 구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적이며 즉흥적이기 때문에 관측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북한의 김정일은 정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것은 대남 강경 공작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차안관계자들이 특히 중시해야 할 상황이다.

V. 통일안보의 문제점과 실태

우리나라 통일안보의 문제점과 실태는 시각에 따라서 천

36) 조선일보, 1994. 7. 13. p.7.

차만별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북한이,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현재까지도 어떤 대남정책을 구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북한과 동조하여 혹은 남한 내에서 단독으로 혁명투쟁을 도모하는 집단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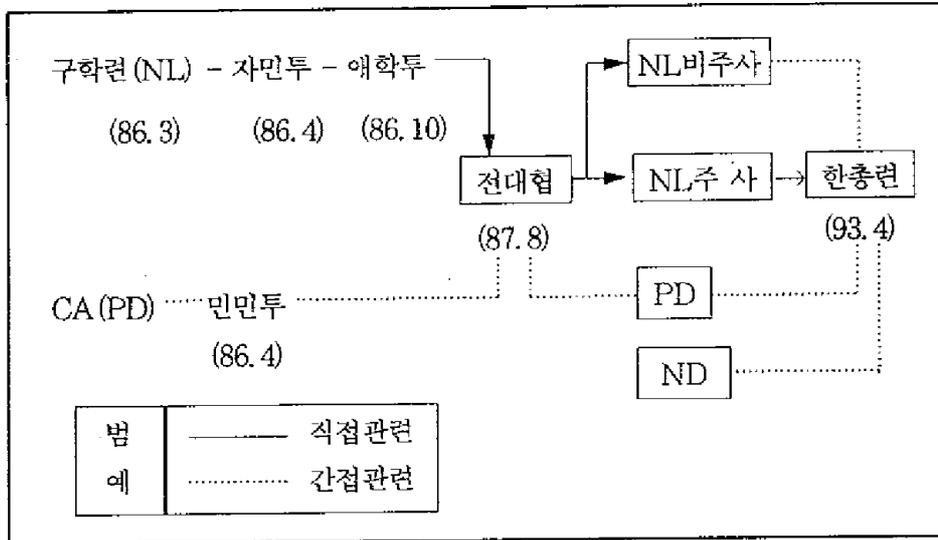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의 이념투쟁 집단인 운동권의 경우는 1987년 8월 NL주사파 관점의 전대협 출범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었으나, 그후 민주화운동 세력과 혁명투쟁 세력이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가 현재 치안실무자의 편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안보의 장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직도 일부 상존하는 반정부투쟁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재야운동까지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1. 운동권의 실상

북한의 핵심 통치 이데올로기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남한을 대상으로한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집단이 NL주사파이다. 이들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김일성의 사망후 더욱 본색을 드러냈으며, 외형상은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로 활동한다.

이는 자신들의 조직일부를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김정

[NL 주사파 중심 학생운동권의 변화도]



일 후계체제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도록 한다는 전술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나,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충격을 주었다.

이런 주사파의 연원은 1986년 3월 서울대생 중심의 비밀 혁명투쟁단체인 「구국학생연맹(구학연)」의 결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이들은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87년 8월 충남대에서 「전대협」이라는 통합된 단체로 나타났고, 6년동안의 이합집산을 거쳐 「한총련」으로 1993년 3월 25일 전북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새로이 출발했다.

현재 NL 주사파는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 그리고 1993년 출범의 한총련이 조직의 핵심이다. 과거 전대협이 NL주사파의 혁명투쟁 단체로서 남한내 변혁투쟁체의 하나였다면, 현재 한총련은 198개 대학을 대표하는 조직체로 인

식되고 있다. 자칭 북한의 남한 공산화를 지지하는 혁명투쟁의 단체가, 우리나라의 198개 전국대학을 대표한다는 모순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이다. 1994년 7월 현재 전국의 198개대가 명목상 한총련에 소속되어 있으며 49%인 64개 대학이 NL주사파이다. 나머지 51%가 PDR계와 NDR계이다.³⁷⁾ 순수한 의미의 총학생회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NL주사파의 활동은 1986년의 등장에서부터 현재까지 크게 식민지 조국의 해방투쟁으로 요약되며, 세분하면 반미투쟁과 통일투쟁으로 구분된다. 전자로서는 1988년 '미문화원 점거 농성투쟁', 1991년 '광주 미문화원 난입투쟁' 그리고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철수투쟁, 남한 핵무기 철거투쟁, 팀스피리트 훈련반대 투쟁을 들 수 있다. 최근들어서는 UR과 관련한 쌀 개방 반대 투쟁까지를 반미투쟁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한의 공산화 통일이라 할 수 있다.

후자로서는 평축참가 대회와 관련한 심야 폭력투쟁(1988. 6), 남총련 열차 탈취사건(1992, 1994), 동아대 전남대등의 인공기 게양 사건(1993. 5), 남북한 통일투쟁을 위장한 경찰관 타살사건(1993. 6), 이인모의 북송투쟁,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 수용투쟁, 국보법폐지 투쟁(1994)등이 있다. 2가지 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의 식민지인 남한을 계급투쟁에 의한 혁명으로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남한 공산화 전략과 동일한 맥락이다.

37) 조선일보, 주사파의 실체, 1994. 7. 27, p.5.

2. 현체제 부정의 운동권 실태

현 정권(현체제와 동일표현)의 출범과 더불어 한동안 언론에서는, 막연하게 운동권과 현정권이 밀월관계에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³⁸⁾

실제로 한 때 정부당국은 NL주사파인 한총련의 구성원을 통일관련 해외 행사의 학생대표로 선정하기도 했다.³⁹⁾

그러나 학생들을 비롯한 재야 혁명투쟁 세력들의 경우는 현정권의 출범초기부터 현정권내지 야당까지를 체제부정의 차원에서 비판했으며, 결과적으로 현체제를 혁명투쟁으로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투쟁의 양상은 1993년의 관망기를 거쳐 1994년들어서는 본격화하고 구체화했다.

1994년에 들어서 일반적으로 운동권이라고 통칭되는 남한내 계급투쟁 세력들은 계파와 관계없이 현정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현체제를 계급투쟁으로 타도하고 노동자와 농민들 중심의 「민주」라고 위장된 공산주의 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것의 다른 표현이다. 관련된 주장을, 주장하는 논지의 객관성 유지와 사실의 분명한 증명을 위하여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

“현정권의 태생적 한계이며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경

38) 한국일보, 대학로, 1993. 4. 21.

39) 위 신문.

제적 애속성과 정권의 불안정성은 현정권 스스로의 힘으로는 개혁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조건과 계기만 주어진다면 국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로 전면항쟁으로 발전한다.”⁴⁰⁾면서, 현재의 사점에서 NL주사파 관점의 한총련산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산혁명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라고 강조하고 있다.⁴¹⁾

“짓밟히고 짓밟혀도 가어이 대지위에 자신의 생명을 터워 내는 민초처럼 제주민중의 삶은 강인하다. 결코 미국의 식민지 지배 사슬아래 개처럼 살 수는 없다. 미국과 현정권 일당과의 투쟁은 민중 스스로의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이며”라고 현정권을 부정하면서, “모든 애국적 민중의 길잡이는 주체사상이다”라고 좀더 과격하게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끝으로 “한반도 핵전쟁 위협, 민족생존 위협하는 미제를 타도하자!! 농산물 전면개방, 민족-민중생존 압살하는 현정권 타도하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세상!! 주체사상 만세!! 민족의 태양, 김일성 수령님 만만세!!”⁴²⁾라는 구호로 끝맺고 있다. 위 내용의 작성자는 자신들의 조직을 안기부 산하의 애국동맹이라고 위장하고 있다.

두개의 다른 주장을 있는 그대로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0) 제3기 총남총련, '94하반기 정기대의원대회 자주민주총진군 49년, p.24.

41) 위 유인물 p.55.

42) 안기부 산하 애국동맹, 제주 민중이어, 4월을 노래하라 조국의 태양이 붉게 떠오른다. 1994. 4. 15 (여기서 말하는 [안기부]는 좌경 운동권이 자신들의 관점을 위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임).

“학우여러분! 시민여러분! 미국의 꼭두각시 현정권 밑에 서는 모두가 죽습니다. 1994년 5월 이제 현정권 퇴진투쟁에 동참합시다”⁴³⁾

“남한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투쟁만세!!!, 남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당 건설투쟁 만세!!!, 마르크스 레닌주의 만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⁴⁴⁾

앞의 주장은 NL주사파 혁명투쟁을 1993년의 설립시부터 전개해오면서, 1994년 들어서 좀더 과격해진 한총련 산하조직의 주장이다. 뒷부분의 내용은 PDR과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상대로 혁명투쟁을 전개해 오고있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자들’이라는 단체의 주장이다.

운동권의 현체제에 대한 부정과 그에 따른 노동자 농민중심의 공산혁명정부 수립주장은 현정부 출범 2년에 해당하는 1994년에 이르러 공개화 되고 합법화 되었으며 본격화 되었다. 그것은 1995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1995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민중정치연합’ (민정연)이라는 단체이다. ‘민정연’은 그들이 발간하는 ‘진보’라는 간행물에서 “현재의 한국 자유민주 체제는 불원간 몰락할 것이며, 좌익의 새로운 정부가 설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노동자 농민은 공산혁명의 승리를 위해 혁명투쟁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⁴⁵⁾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수반동세력(정

43) 제3기 남총련산하 불멸의 돌격전사 민족해방군, 오월의 후에, -- 널리 선포합니다” 1994. 5. p2.

44) 노해투사, 「노동자의 사상」(1994. 1), p.4.

45) 민정연, 「진보」(1994. 8.), pp.6-9.

부와 여·야 포함)들이 현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안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사회 내부의 혁명투쟁 세력 침투 실상

대다수 국민들은 운동권의 혁명투쟁하면 그것은 대학생들과 일반 재야단체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9월 8일 관계 당국은 고등학교에도 NL주사파 혁명투쟁 조직이 침투하여 활약하고 있고, 그속에는 고교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대다수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⁴⁶⁾ 다른 한편 지난 10월 27일에는 운동권이 군 내부에도 다수 침투해 있으며, 반란군 결성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⁴⁷⁾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까지, 그리고 유사시 우리의 국방을 책임질 군대에까지 공산혁명 투쟁집단이 침투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개연성은 이들 양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 사회의 특수층에 해당하는 두 집단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먼저 전자의 경우이다. 첫째, 사회 일각에 흐르고 있는 반정부적 혹은 진보적 사고의 붐을 타고, 출판물을 매개체로

46) 동아일보, 1994. 9. 9.

47) 세계일보, 1994. 10. 27.

하여 자연스럽게 초 중등 학생들에게 혁명사상을 주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철학과 역사의 진리를 밝힌다는 교양서의 형태로, 또는 학력고사등의 논리력을 신장한다는 형태로 구체화 되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둘째, 한국의 현대사를 바로잡는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1919년의 3.1운동은 1917년에 있었던 러시아에서의 공산 혁명투쟁의 승리가 전적인 영향이라는 것이다.⁴⁸⁾ 그리고 6.25사변의 경우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시 전쟁이거나, 남한의 북침에 대응한 북한의 민족해방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당한 전쟁의 일환이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다.⁴⁹⁾

셋째,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하여서도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많다. 이러한 내용의 상당수는, 남한의 현정권을 포함한 역대정권은 반통일세력이라며, 은연중에 북한공산정권과 남 북한의 민중들만이 진정한 통일세력이라고 유물사관의 측면에서 통일문제를 규정하고 있다.⁵⁰⁾

이처럼 대학생 및 기성세대로부터 좌경의식화된 것으로 보이는 초 중 고생들의 경우는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겉으로 드러난 실상은, 최근 당국에 의해 적발된 고교생 반미-주사파씨클 ‘샘’을 들 수 있다. 그들은 11개교에 걸쳐 회원이 38명이었으며, 빨치산 출신을 초빙하여 지리산에서 수련

48) 교육출판기획실, 「삶, 사회, 인간, 교육」(푸른나무, 1991), pp.23-65.

49) 교육출판기획실, 「거꾸로 읽는 교과서」(푸른나무, 1989), p.85.

50) 오문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념 침투의 실상」(1993. 9). pp.126-128.

회를 가졌으며, 재야주도투쟁의 시위에 참여하고, 주체사상이라는 것까지를 학습한 것으로 밝혀졌다.⁵¹⁾ 그러나 이런 활동은 유난히 1994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1990년대초부터 '고등학생 정치활동 쟁취를 위한 공동실천 모임' '전북지역 고교 민주적학생회건준위', '서울 남부지역 고등학생운동위원회' 등을 결성하고, '고등학생 정치투쟁제안서', '고운기치' 등의 간행물을 발간했고 1992년의 대선시 전국연합과 범민련등의 좌경적 통일투쟁과 선거투쟁에 참여하기도 했다.⁵²⁾ 전남 광주지역에서는 한총련이나 남총련처럼 고교생대상의 '광고협'을 결성하고자 했다.

한편 운동권의 군침투는 초 중등 학생들에 대한 이념적 침투보다는 늦게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정확하게는 1987년의 6·29선언이후 사회의 민주화 진행과 더불어 이원된 치안 유지 기능의 틈을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그전까지 군대의 경우는 운동권을 순화하는 도장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1987년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운동권의 군침투는 크게 자민투(自民團, NL주사파의 전신)계열의 적극적인 군대내 침투, 민민투(民民團, PDR파의 전신)계열의 해방군 창설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양계파에서 2가지 형태의 병행된 투쟁전략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51) 중앙일보, 1994. 9. 9, p. 22.

52) 오문권, 「청소년대상 이념투쟁의 심상연구」(1993), pp. 87-92.

먼저 대 군침투와 활동이다. 첫째, 운동권의 혁명투쟁에 대한 군의 중요성 재인식이다. 운동권에서는 1917년의 러시아 그리고 1945년이후의 중국과 베트남 쿠바등에서, 군이 혁명투쟁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혁명이 승리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⁵³⁾

둘째, 1980년에 있었던 광주사태에 대한 계급투쟁 진영 자체의 평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운동권은 1980년의 광주민주화 항쟁을 계급투쟁의 차원에서 평가하면서, “광주의 무장봉기는 혁명을 생각해오던 그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 되었다. --- 중략 --- 계엄군 사병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틈서리를 빌어내어 군대를 민중의 편으로 돌리는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⁵⁴⁾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보면 1980년 광주에서의 계급투쟁에는 혁명을 지원해줄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따라서 계급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명군의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근거로 군대내에 침투한 기성 운동권은, 젊은 대학생중심의 군인들에게 반미 반정부 의식을 심어주는 활동, 궁극적으로는 혁명투쟁의 핵심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들은 군내부의 비리폭로, 탈영이나 총격전, 자살 등을 공산주의 혁명투쟁의 전술로 채택하여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⁵⁵⁾

53) 오문균, 「좌경운동권의 군 침투전략과 전술」(1989 12), pp.63-64.

54) 「노동해방문학5」노동문학사(, 1989), p. 89.

55) 동지제군!, 1988년말, p.29(자민투쟁 자필 유인물; 吳文均, 앞의논문, pp.59-60.

한편 운동권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체 혁명군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DR파는 단순히 '혁명군'의 양성이고, NL주사파는 '구국선봉대' 혹은 '민족해방군'이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주요 계급투쟁집단의 행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대학별 명칭을 보면, 서울대는 '구심대', 전남대는 '오월대', 경상대는 '지리산결사대', 중앙대는 '의혈대', 한신대는 '전선대' 등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현재 각 대학운동권의 경우는 자체 혁명군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⁶⁾

4. 북한 및 혁명세력에 대한 경계의식 미흡

북한 공산정권의 대남 적화야욕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으나 한반도 주변정세 그리고 남한 국민들의 대 북한 경계의식과 남한내 좌익세력에 대한 경계의식은 현저히 약화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1994년 하반기들어 관계당국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시험해보기 위해 북한말과 북한돈을 상점등에서 사용하면서, 간첩용의자에 대한 국민들의 고발정신을 시험한 바 있다. 그러나 간첩용의자에 대해 국민들의 경우는 어떤 신고도 없었다. 다만 어린 국민학생들 몇명이, 북한에서 남한에 보낸 불

56) 오문환, 「계부민회집단의 실태와 한총련」(1994. 11. 15), pp. 70.

은선전물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이는 매우 사소한 일 같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법적 대응의 심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의 경우는 그동안 남북화합의 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전무했던 북한과의 경제교류 그리고 핵문제와 관련한 북 미 회담등을 지켜보면서, 북한은 결코 남한을 공산화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아직도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남한과 일방 경제교류를 하고 미국과 수교협상을 벌이는 것은, 남한을 고립시키고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시간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 1994년 말 북한은 미국에게 남한을 제외한 평화협정을 요구하여 점차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1995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둘째,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북한과 남한의 엄존하는 남한 공산화 세력은 자신들의 투쟁목표를 수시로 변화시키면서, 남한을 공산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본목표는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세력들의 전술변화에 대한 남한관계 당국의 사법적 대응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국민들의 경계의식 역시 매우 약화되었다.

오늘날 남북한의 통일과 민주 그리고 민족의 진정한 해방 그리고 노동해방이라는 용어는 남과 북 계급투쟁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고유 언어가 되어버렸다. 상대적으로 남한의 경우는 현정권과 최고지도자까지도 반통일세력 혹은 보수 반동집단 그리고 매국적 식민지 관리자의 일부로 매도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북한과 남한내 일부 공산세력의 전술변화에 둔감한 상태다. 이는 좌익운동권의 용어 혼란 전술이 국민들에게 깊숙히 침투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남한 국민들의 대다수는 분단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하여, 남북통일에 대해 근거없는 낙관주의를 피력하고 있다. 심지어 남한을 극단적으로 위협하는 핵무기까지도 북한이 개발하면, 언젠가는 남한이 북한을 통일할 것이고, 핵무기는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되리라는 환상에 젖어 있다. 이 역시 관계당국의 극히 안이한 대북 대응태세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은 남한이 백가쟁명식의 통일론 그리고 혼란된 대 북한론으로 사회가 동요하길 바라고 있다. 그때 공산주의식으로 남북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남한의 1995년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지방자치제 원년이나 다름없는 해이다. 그리고 연이어서 1996년과 1997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치루어야 한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침예한 이념전쟁을 전개할 때 소련은 미국의 제반 선거시기를 이용하여 공산세력의 미국내 확산을 시도했었다. 월남의 공산화도 그 때 이루어졌다. 남한

을 상대로 한 북한과 남한 계급투쟁 집단의 투쟁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국내 계급투쟁 집단은 현정권을 상대로 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개될 선거라는 열린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자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태세가 지금까지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현재까지도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5. 독일·에멘 통일의 문제점과 교훈

(1) 독일·에멘 통일의 문제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지구상에는 불행한 부산물의 하나로 분단국이 생겨났다. 즉 유럽에서는 동·서독(1945. 5. 8)이, 동양에서는 남·북한(1945. 8. 15) 그리고 월남·월맹(1954. 7. 21)이 중동지역에서는 남·북예멘(남예멘은 1967년 영국에서 독립, 북예멘은 1918년 터키에서 독립하였으나 분단됨)이 그 대표적 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들 분단국들은 실질적인 통일에 이르렀으며, 가장 상징적인 최근의 사건으로는 1990년 10월 3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로 대변되는 독일의 통일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990년 5월 22일의 남·북 예멘의 양국 합의에 의한 통일이었다. 전자는 우

리와 유사한 체제속에서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서독중심의 통일이어서 우리를 설레게 하였다. 한편 후자는 의견상은 양국 국민들 모두가 서로가 원하는, 즉 부족한 것을 서로가 평화적으로 배꾸어 주는 통일이었기에 우리를 부럽게 했다. 그러나 2개의 국가 모두에게 통일이 4년여에 이르는 지금, 하나 둘씩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예멘의 경우는 내전까지 겪으면서 재통일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첫째, 독일의 경우는 소리없이 통일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였다고 하나, 예상외로 빠르게 통일이 된 이후 여러가지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서독의 경우는 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봄으로써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준비를 소홀히 했다. 내부적인 준비를 했다고 하나 공식적인 서독정부의 통일방안이 나타난 것을 1989년 11월의 콜수상에 의한 3단계 10개항의 통일방안이 최초이고 전부였다.

둘째, 서독의 경우는 지속적인 양독간의 교류와 관련하여 폐쇄적인 공산주의 경제인 동독경제에 대해서 심각한 비판을 했다.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이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간파를 못하고, 동구의 공산체제중에서는 제일 나은 상태인 동독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을 했다. 이는 바로 동독인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사범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져 과거의 서독 단일체제와는 달리 치안상의 제반 문제를 급증시켰다.

셋째, 45년에 이르는 공산주의 동독체제가 쉽게 자유민주체제로 전환되리라고 낙관을 했다. 분단국중 공산국가 스스

로의 몰락에 따른 평화적인 흡수 통일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정치체제는 하루아침에 우월한 자유민주체제로 동화되리라고 생각했다.

이는 나름대로 서독이 분단된 상태하에서도 400만의 동독 이주민을 성공적으로 서독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는 근거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서독의 경우는 동독에 대해서 자신들의 경제력, 법, 제도 등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독으로 이주하지 않았던 동독인들의 경우는 서독의 경제적 제도, 법과 사회제도에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연계고리 역할만을 했다.

넷째, 일단 동 서독이 통일되자 독일인들의 경우는 어떠한 형태의 고통도 분담하여 나누어 가진다는 의식보다는, 집단적 혹은 개인적 이기주의 만을 앞세움으로써 실질적인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동 서독의 통일비용의 부담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었다. 심지어 이를 중재할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에서 갈등은 정도의 차이였을 뿐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고, 그것은 법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로 악화되었다.

다섯째, 예상치 않게 주어진 동 서독의 통일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무리한 경제통합을 추진했고 그것은 향후 직접적인 경제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동 서독의 실물경제력에 상응하지 않고

동 서독의 화폐를 1:1로 통합했다. 이는 결국 불가와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동독기업의 경우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는 바, 반환청구소송 등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재건의 커다란 장애요인이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치안당국이나 사법당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⁵⁷⁾

에멘의 경우는 하나의 국가 2개 체제로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우리의 통일접근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실천적 합의없이 정치지도층간의 권력안배식 정치통합이 이루어졌고, 향후 권력구조와 정책방향을 둘러싼 정치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이는 권력분배 과정에서 소외된 북에멘의 부족세력과 회교원리주의자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비현실적인 1국가 2제도 방식의 형식적 체제혼합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정책결정 및 집행체제의 미확립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 나라의 권력향배 그리고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대를 통일에멘은 어느쪽도 장악하지 못했다. 에멘의 경우 통일후에도 군대는 남 북에멘군 그리고 체제의 통

57) 동서독 통일의 문제점은 통일원의 「독일 및 에멘의 통일휴유증 원인」(1994. 5); 통일인수원의 「통일문제 이해」(1994), pp.303-339; 강석승의 "분단국 통일유형과 우리의 통일" 「자유공론」(1994. 5), pp.125-131 참고.

합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족군대등으로 3분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첫번째와 두번째의 요인에 의해 이미 내전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셋째, 통일예멘은 북예멘 지역의 자유민주체제, 남예멘의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통합에 대한 사전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 물론 독일처럼 경제체제상의 괴리는 크지않았으나, 기본적인 차이점을 안고 있었던 경제체제의 문제는 통일 예멘의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또한 자유민주체제 방향으로의 통일은 사회주의 경향의 이라크의 지원이 중단되는 계기가 되었고,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끝으로 아랍사회에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부족들간의 할거 분할주의가 통일 예멘의 통합적 요소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사회분열의 요소로 작용했다. 즉 회교 부족의 보수주의와 사회주의적 관점의 남예멘 개혁노선 간의 갈등이 통일후 심각하게 나타난 것이다.

(2) 독일과 예멘의 통일 교훈

독일과 예멘의 경우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차원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두 나라와 분단은 동일 시기에 되었으나 아직 통일의 희망은 요원한 우리는 독일과 예멘의 통일을 교훈삼아 좀더 완벽한 통일을 이루어야 겠다.

첫째, 점진적 단계적 통일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독

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성숙되면서 통일 독일이 생각보다 쉽게 왔다.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신속한 조기통일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 통일의 후유증을 증폭시켰다는 평가다.

먼저 서독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동독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동독의 경제상황이 열악함을 우선 예견치 못하였으며,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어려움을 간과했으며, 자신들의 경제력과 경제체제의 탄력성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는 등 3대실수를 범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통일을 너무 서두르거나, 이의 실현을 위해 성급한 조기 통일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둘째, 대내적 통일기반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요인이다. 독일이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① 정통성 있는 민주정치의 발전, ② 튼튼한 경제력의 건설과 사회복지의 구현, ③ 사회의 안정을 조기에 실현하여 내부적인 큰 혼란없이 통일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가 NL주사와 계급투쟁 세력 그리고 재야인사 세력들에 의해서 「반통일세력」 혹은 「매국세력」으로 매도되고 있고, 상당수의 재야인사와 정치인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대내적 통일기반 조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현재 극히 취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셋째, 대외적 통일여건의 조성이다. 독일의 통일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몰락과 동독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향

한 격동적인 변화과정에서 조성된 '통일의 기회'를 서독 정부가 적절하게 활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⁵⁸⁾

서독의 관리들은 독일의 통일이 급격히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리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영원히 이루지 못할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것이었다고 슬회하고 있다.

대외적 통일여건의 경우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경우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경우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서 남북한 통일을 적극적으로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량을 남·북 어느편이 좀더 슬기롭게 발휘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 동서독의 경우는 서독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지휘계통상의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예멘의 경우는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예멘은 통일을 주도하는 정치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내전이라는 불행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우 통일의 주도세력 문제와 관련하여 비관적이다. 남한측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우월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만형」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

58)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이해」(1994), pp. 334-335.

은 지조를 지킨 자주국가이며 「남편」에 해당하나,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남편을 배신한 화냥년이라고 극단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책임자간의 격의없는 의견교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경우는 정부의 대 북한 정책을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1990년의 통일까지 정치가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통일하자고 결코 말을 꺼낸적이 없었다. 일단 통일의 기회가 주어지자 독일 정부와 기업, 국민들 모두가 단결을 해서 이루어냈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된지 6개월 만에 「통일조약」을 완성하고 1990년 8월 31일을 통일의 날로 만들었다.⁵⁹⁾

Ⅶ. 통일 안보를 위한 대비책

1. 국내 안보 실상의 올바른 이해

우리국민들 모두는 외견상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경우까지도

59) 조선일보, 1994. 10. 3(신동원 전 독일대사의 증언)

예외는 아니다. 물론 6.25사변을 몸소 겪었고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월남한 전전(戰前)세대들까지도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재를 자체를 잘안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산주의는 신(神)을 부정하며, 인명을 함부로 대하는 잔인한 사람들, 개인의 사적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체제 정도로 이해한다. 전후(戰後)세대들의 경우는 머리에 빨이 난 못된 사람들 정도로, 혹은 경제적으로는 약간 어려우나 다같이 평등하게 사는 우리와 별차이없는 나라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이라는 공산독재국가를 상대로 하여 통일운동을 벌여야 하고, 또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막연히 감상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알아야 한다. 즉 공산주의는 무조건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유물론의 시각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함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는 보현사(사찰)가 있을 수 있으며, 교회와 성당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남한내 이념투쟁 집단은, 북한에 절과 교회와 성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남한 위정자들을 반공을 권력유지로 활용하고 북한을 철저히 비판한 거짓말장으로 선전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연계선상에서 사회주의나 진보, 제반 민중론, 과학적 사회주의, 지식사회학,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으로 위장된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는 모른다. 국내의 이념 투쟁세력

에 대한 실상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이나 노동자, 재야 운동권이 자신들의 실체는 민주화투쟁체, 통일운동체 그리고 노동해방단체등으로 위장하면, 일반국민들의 대다수는 그 위장된 사실의 본질을 모른다. 따라서 모처럼 소신있고, 용기 있는 발언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일부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북한과 주변국의 올바른 이해

우리 통일의 직접적 상대는 북한이다. 간접적 상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의 주변국이다. 그러나 국민대다수와 치안실무자는 북한과 주변국의 실상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진상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않는다. 한 예로 관계당국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의 간행물과 영화등을 공개해도 전문관계자외에 이를 열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공산국가 중국을 가서 본 여러가지 형태로 관광한 여행객은 많아도, 실무자가 중국을 직접 체험한 경우는 드물며, 체계적 연구서도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치안실무자를 위해 북한의 형법과 관련한 분야들, 그것에 기초한 남북한 법체계를 고찰했다. 북한의 경우는 형법의 만혁명범죄를 이용하여 남한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조문보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몇십배 더 규제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법에도 없는

조문을 유추해석하여 국민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남한내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며, 남한내의 혁명세력 그리고 재야단체, 일부 인사들까지도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폐지만을 강하게 외치고 있다. 남북한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것은 최소한 안보관계자들이라도 북한의 실상을 자세히 알고 그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의 이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선행되어야 한다. 실무자의 측면에서는 독일과 예멘의 통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반 휴유증과 관련한 문제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이 논의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우회 투쟁에 대한 대비책

북한 공산정권은 앞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분간 통일의 전단계로서 남북한의 평화정착이나 교류보다는 남한의 공산화에 주력을 기울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체제가 불안하면 할수록 남한사회의 혼란을 목표한 공작을 강화할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은 남한내 북한 동조자들을 통한 여러가지 사회혼란투쟁을 과거보다 몇배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양상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한사회의

혼란을 유발할 것이며, 유엔비이를 유포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현재 남한내에 다수의 간첩을 파견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 북한분제 전문가는 자신이 나름대로 고안한 단파라디오 수신현황을 근거로 남한에 북한간첩이 최소한 수만명 활동하고 있다고 몇년전 고발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이미 합법화된 개방통로의 하나인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용해 수시로 간첩을 보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북한은 국내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제3국의 해외 근로자를 간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서독에도, 동 서독의 통일을 전후하여 사회의 혼란을 노리는 동독 간첩들의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했었던 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의 국민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속에 대북 경제교류등을 통한 돈벌 궁리만 하고 있다. 치안관계 당국에서는 이런집에 착안하여 여러가지 치안상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과 남한내 혁명세력들에 의한 사회혼란의 대응책은 치안 관계당국과 유관기관 그리고 제반 관계단체가 협조하여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가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의 경우는 남한을 공산화하고자 하는 기본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남한내 좌익투쟁집단과 북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남한내의 운동권의 경우도 과거처럼 폭력 일변도의 투쟁을 버리고 여러가지 형태의 변형된 투쟁을 전개할 것인바 첫째, 그들 말대로 문민정부의 개혁을 이용하여 민주화단체 혹은 노동운동 단체를 가장한 합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혁명투쟁 강조의 노래, 연극, 소설 등 문예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1995년, 1996년, 1997년의 계속된 선거라는 열린 공간을 이용한, 선거시 투쟁을 활성화 할 것이다.

이런 우회투쟁의 특징은, 국민들의 경우 그것의 진위(眞僞)에 대한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이념문제의 전문가에 해당하는 일반 치안실무자들의 경우까지도 판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폭력보다는 예술활동등을 이용한 우회투쟁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느 측면보다 심도깊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4. 중·단기 대책의 수립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치안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서는, 야기될 문제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시급히 양성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할 남한사회의 안정이 급선무이나, 우리의 치안현실은 대응할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사회가 복잡 다기화 하면서 제반 범죄가 복잡해지듯이, 통일과 관련한 우리의 안보의 문제점 역시 점차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북한 및 국내의 운동권 세력이 남한 사회의 혼란을 목표로 하여 전개하는 제반 투쟁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한 예로, 노동운동이 학생운동보다 점차 강한 이념투쟁의 형태를 띠 것으로 예상되나, 치안실무자의 차원에서 이를 이념투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혁명집단의 경우는 계속되는 선거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합법과 비합법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치안실무자의 분석과 대책은 역시 단편적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제3자에 해당하는 대학의 총장들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내부의 안정이며 그에 따른 치안상의 중 단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는 민족의 최대 숙원인 통일에 대해서 비관이나 자만을 하지않고 꾸준히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며, 마침내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 자료

〈단행본〉

- 교육출판기획실, 「삶·인간·교육」. 서울: 푸른나무, 1991.
- 법제처 편저, 「북한법제 개요」, 서울: 한국법제 연구원, 1992.
- 법무부, 「북한법 연구」. 1990.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 유석열, 「남북한 통일론」. 서울: 법문사, 1994.
-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의 이해」. 1994.
- 한기해, 「국가보안법」. 서울: 공동체, 1989.
- 허동찬, 「김일성 항일투쟁 공방」. 서울: 원일정보, 1989.

〈논 문〉

- 오문균, “간첩단 사건 계기로 본 북한 대남공작의 실체”, 1993.
- , “계투변혁집단의 실태와 한총련”, 1994.
- , “좌경운동권의 군 침투전략과 전술”, 1989.
-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념침투의 실상”, 1993.
- , “한국의 초기공산주의 활동에 관한 연구”, 1985.
- 장청수, “한반도 통일환경의 명암”, 1994.

〈공식·비공식 간행물〉

노동문학사, 「노동해방문학 5」, 1989.

노해투사, 「노동자의 사상」, 1994.

동지제군!, 1988년말.

민정연, 「진보」 8월호, 1994.

사노맹, 힘찬 노동법 개정투쟁으로 반 김영삼정권의 선을 굳
게 세우자, 1993.

애국경성 총노선, 1994.

제2기 한총련, 제2기 한총련 '94대의원 대회, 갑오농민전쟁
100년 4월.

제3기 총남총련, 94하반기 정기대의원 대회, 자주 민주 통일
진군 49년.

2. 북한 자료

김근식, 「형법학 I」,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1986.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허종호,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 출
판사, 1975.

3. 일본 자료

김규승,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刑事法制」, 동경: 社會
評論社, 1988.

통일교육용 자료(8종)

- | | |
|-------------------------------|-------------------|
| • 북한의 체제와 이념(공직자편) | 전인영(서울대 교수) |
| •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교직자편) | 박덕규(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 • 통일과 경제적 과제(상공인편) | 이상만(중앙대 교수) |
| • 북한경제와 주민생활(근로자편) | 이태욱(서강대 교수) |
| •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여성편) | 이온숙(서울대 교수) |
| •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대학생편) | 한준상(연세대 교수) |
| •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이해(문화·예술인편) | 김문환(서울대 교수) |
| •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경찰·공안편) | 오문관(경찰대 연구관) |

경찰·공안편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

1995年 5月 5日 印刷

1995年 5月 10日 發行

發 行 處 統 一 院

教 育 弘 報 局 教 育 課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電 話 : 7 2 5 - 3 9 4 5

통교 95-4-24

<비매품>